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⑨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http://www.kma.org]/전화(02)6350-6655/전송(02)790-8911
보험국 국장 김기성 [6574]/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6572]/ 팀원 문성현 [6585]/E-mail:kma6350@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9994호

시행일자 2023. 11. 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건보공단 신약관리부-2203(2023.11.3.)

2.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신규계약)으로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접수 담당 연락처.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